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25일

나. 제출자 : 고기판 의원 외 6인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만료 및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임기만료 및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안 별표 2(제10조제5항 관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7.22일 제정되었으며,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에 의한 임기 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에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2년 이내에는 재위촉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 2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2.6.21일 개정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연임에 의한 임기 만료 위원이나 위촉 해제된 위원 등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의 위촉 및 임기만료일이 동일하거나(11개 동 주민센터)

특정일에 편중되어 있어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시점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2.6.21 개정내용 : 연임할 수 있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
----------	-----

발의년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고기판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만료 및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함.

2. 주요내용

- 가. 임기만료 및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안 별표 2(제10조제5항 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

2.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수강시간(월)	수 강 료(월)	비 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 산출근거 : 월시간×시간당강사(자원봉사)수당/20명(기준수강인원)
= 1인당수강료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17조(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u>

현행	개정안																								
<p>[별표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p> <p>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p> <p>2. 수강료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div></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수강시간(월)</th> <th style="width: 20%;">수강료(월)</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수강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시간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0원 이하</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시간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원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시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산출근거 : 월시간×시간당강사(자원봉사)수당/20명(기준수강인원) = 1인당수강료</p>	구분	수강시간(월)	수강료(월)	비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p>[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p> <p>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p> <p>2. 수강료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div></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수강시간(월)</th> <th style="width: 20%;">수강료(월)</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수강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시간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0원 이하</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시간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원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시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산출근거 : 월시간×시간당강사(자원봉사)수당/20명(기준수강인원) = 1인당수강료</p>	구분	수강시간(월)	수강료(월)	비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구분	수강시간(월)	수강료(월)	비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구분	수강시간(월)	수강료(월)	비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p>[별표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20%;">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td>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액면제</td> </tr> <tr> <td>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td> </tr> <tr> <td>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td> </tr> <tr> <td>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td> </tr> <tr>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td> </tr> <tr> <td>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td> </tr> <tr>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p>[별표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20%;">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td>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액면제</td> </tr> <tr> <td>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td> </tr> <tr> <td>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td> </tr> <tr>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td> </tr> <tr> <td>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td> </tr> <tr> <td>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